# KS인증업무규정

제정 2016. 1. 14.
개정 2017. 3. 16.
개정 2019. 8. 19.
개정 2021. 1. 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 라 한다) 인증기관으로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KS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KS인증업무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KS인증매뉴얼, KS인증절차서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KS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외에 KS Q 8001(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65(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 라 함은 진흥원이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대상 제품이 KS 및 KS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 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심사는 인증대상 품목에 대해 최초로 하는 인증심사(이하 "최초 인증심사" 라 한다) 및 최초 인증심사 이후 품목을 추가하는 인증심사(이하 "품목 추가심사" 라 한다), 동일품목에 대해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는 인증심사(이하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추가 인증심사" 라 한다)로 구분된다.
2. "인증기준" 이라 함은 진흥원이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산업표준화법령, KS,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진흥원이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요구사항을 말한다.
3. "공장심사" 라 함은 진흥원이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확인심사" 라 함은 공장심사 결과, 인증신청자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 라 한다)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진흥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5. "제품심사" 라 함은 진흥원이 제품의 품질이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심사" 라 함은 진흥원이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인증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현장조사" 라 함은 인증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인증받은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때 진흥원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8. "공장이전 심사" 라 함은 진흥원이 인증받은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9. "변경심사" 라 함은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 인증제품이 KS 및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신설2019.8.19)
10. "시판품조사" 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개정2019.8.19)
11. "현장조사" 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19.8.19)
12. "공인시험·검사기관" 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KS Q ISO/IEC 17020 또는 KS Q ISO/IEC 17025를 근거) 및 절차에 따라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3. "KS인증위원회" 라 함은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등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해 진흥원내에 구성·운영하는 기구(이하 "인증위원회" 라 한다)를 말한다.
14. "KS기술위원회" 라 함은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등의 업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진흥원내에 구성·운영하는 기구(이하 "기술위원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장 조직 및 운영 등

**제5조(인증위원회 설치)** 진흥원은 KS인증업무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등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에 인증위원회를 두어야한다.

**제6조(인증위원회 구성)** ① 진흥원은 인증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인증 전문가 및 지능형 로봇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인증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경영책임자가 위촉한 위원들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인증위원회는 외부 위원 5명 이상,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자 1/3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받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정하며, 인증책임자는 당연직 위원, 인증담당자는 간사가 된다.

**제7조(인증위원회의 권한)** 인증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의 심의
2. 인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3. 인증의 공평성 보장을 위한 조치 결정
4. 인증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방안 결정
5. 기타 진흥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인증위원회 운영)**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구성인원의 2/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 결정 외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 할 수 있다.

③ 진흥원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규칙에 의거하여 인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술위원회 설치)** 진흥원은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위해 진흥원내에 기술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0조(기술위원회 구성)** ①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분야의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 인증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경영책임자가 위촉한 위원들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 받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정하며, 인증책임자는 당연직 위원, 인증담당자는 간사가 된다.

**제11조(기술위원회 운영)** ① 기술위원회는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전 기술적 검토 후 인증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 수당 및 제수수료 지급규칙에 의거하여 기술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조직의 구성)** 진흥원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및 표준에서 규정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의 책임과 권한, 적격성 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인증심사원)** ① 진흥원은 진흥원 내부 직원 또는 외부인력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자 중 심사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 자격,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외부인력의 활용)** 진흥원은 외부인력을 인증심사원으로 활용할 경우, 외부인력과 직접 또는 외부인력이 소속된 기관과 인증심사원 활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부인력과의 계약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인증업무 수행)** ① 진흥원은 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인증업무와 관련된 자는 KS인증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KS인증과 관련한 일체의 자문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은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의 문서화,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의 수립 등 공평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검사의 위탁)** ① 진흥원은 KS인증업무와 관련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KS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단, 일부 시험·검사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 감독)** ① 진흥원은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등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심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근거로 KS인증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① 인증제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인증제품의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인증제품의 제조공장명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을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KS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표원장에게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및 결정에 관하여 의뢰자와 의견 충돌 시 법리적 해석을 KS인증지원사무국, 국표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유권해석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이의제기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비밀준수)** 진흥원은 인증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진흥원 보안규정에 따른다.

**제20조(배상책임)** 진흥원은 인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비치 · 보존)** 진흥원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주요 문서 및 기록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문서는 영구적으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제22조(보고)** ①진흥원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실적 및 현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적
3.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 취소 실적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업무가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9)

**제23조(협력 의무 등)** 진흥원은 인증기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에 KS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하며, 인증기관협의회에서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2019.8.19)

## 제3장 KS인증 신청, 심사계획 및 심사준비

**제24조(인증신청)** ① 지능형로봇에 대한 KS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SO 9001 인증서 사본,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및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주요 문서화된 정보(해당하는 경우)
2.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

3.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에는 외주가공 업체 현황, 일부 외부 시험·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 시험·검사설비 업체 현황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제25조(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① 진흥원은 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 검토 결과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2회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반려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심사계획 수립)** 진흥원은 최초 인증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일정 및 인증심사반 명단을 확정한다.

1.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심사일수 기한 연장에 대하여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를 수행하는데 적격한 심사원을 선정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심사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가. 심사원 등록여부 및 인증절차 숙지도

   나. 인증 범위에 대한 전문기술 또는 기술자격 소지여부
4. 심사반은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한 심사원 2인으로 구성하되,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이어야 한다.(개정 2019.8.19)

**제27조(심사통보)** ① 진흥원은 인증심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준비사항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1. 심사일정표 및 인증심사원 명단
2. 심사 구비서류

3.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공장심사비

② 진흥원은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인증심사

**제28조(인증심사기준)** ① 진흥원은 국표원으로부터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해당 KS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인증심사기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전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적 검토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인증심사기준을 KS인증지원사무국에 제출하여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받아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공장심사)** ① 인증심사원은 최초 인증심사 및 공장 이전심사에 대하여는 심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정기심사는 심사일 이전 12개월 이상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공장심사 판정기준은 KS Q 8001 부속서B에 따른다.

② ISO 9001 인증기업이 핵심품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공장심사의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품질경영에 대한 심사를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 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초 인증심사에서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모델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는 생략(적합 "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개정2021.1.25)

④ 인증신청자가 공장심사 현장에서 심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일정을 중단하고, 부적합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진흥원에 보고한다.

⑤ 진흥원은 제4항의 경우 인증신청자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며, 위원회 심의 시 인증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2019.8.19.)

⑥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심사대상 공장에서 인증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9 및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의2에 따라 비대면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21.1.25)

**제30조(제품심사)** ①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에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하게 된 경우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개정2019.8.19)

② 진흥원내의 조직이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조직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품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인증신청자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④ 공인시험·검사기관은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진흥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제품심사 결과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른 인증 불가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 인증신청자는 제품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재시험을 받을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동일 품목의 개선 모델에 대하여 신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장 인증심사 후속조치

**제31조(심사 결과보고 등)** ① 인증심사원은 진흥원에 공장심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에게도 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한다.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핵심품질 평가항목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심사를 통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한다.

④ 진흥원은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에 진흥원은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⑥ 공장심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에게 제품심사 계획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심의)** ① 진흥원은 공장심사 결과 및 제품심사 결과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승인을 결정한다.

1. 공장심사보고서
2.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해당 시에만 첨부)
3. 시험성적서

② 진흥원은 인증의 승인, 취소 등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해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인증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인증계약 체결 등)** ① 진흥원은 인증 신청제품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KS마크 등의 표시 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이하 "인증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따른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5. 인증제품의 표준번호, 표준명 및 종류·등급·호칭·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최초)인증일, 인증기관 변경일(해당되는 경우), 정기심사기한
8. 인증기관명(개정2019.8.19)

③ 진흥원은 인증서 발행 후 일반인이 해당 인증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장 사후관리

**제34조(인증받은자의 문서 비치 · 보존)**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35조(정기심사)** ① 인증받은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은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되, 공장심사에서 적합(일반품질 부적합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보며, 핵심품질 부적합은 제외)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④ 진흥원은 정기심사결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인증받은자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한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표창을 받은 자,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른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⑥ 인증받은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기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에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모델의 정기심사 시기가 다른 경우 정기심사 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일괄 신청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⑦ 정기심사 시 심사 결과보고 및 부적합 개선조치는 제31조를 준용하되,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와 공장심사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인증책임자는 인증유지를 결정한다.

⑧ 제7항의 경우 부적합사항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기간 내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진흥원은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⑨ 진흥원은 인증 유지, 취소 등 최종 결과를 정기심사를 받은 자에게 문서 또는 전

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인증 재계약 및 인증서 재발급, 인증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개정2019.8.19)

**제36조(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인증받은자에 의해 인수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진흥원은 기관 변경 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기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인증받은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계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증기관이 정기심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인증정보 :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KS번호, 인증품목, 종류・등급・호칭・모델
3. 심사이력 : 최초인증심사일, 정기심사일, 1년 주기 공장심사일, 공장이전심사일,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일, 특별현장조사일
4. 사후관리 :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및 처분 관련사항
5. 기타사항 : 민・형사상 또는 행정 소송 관련사항, 인증기관 변경 이력 등

③ 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심사는 공장 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의 결과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받은자 또는 진흥원은 인증번호, 인증제품, 인증서 발급예정일 등을 인증서 발급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진흥원은 인증받은자의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 민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다.

⑦ 진흥원은 인증서 발급예정일까지 제6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개정2019.8.19)

**제37조(특별현장조사)** ① 진흥원은 인증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받은자의 공장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 현장조사 시 공장심사는 정기심사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의 경우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항목에서 정한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인증받은자에게 1회의 제품시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시판품조사 등)**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또는 발생 예상되어 국표원장으로부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진흥원은 이를 위해 인증심사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장 KS인증 변경 등

**제39조(KS 개정에 따른 조치)** ① 진흥원은 인증 제품에 관련된 KS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받은자에게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제품생산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는 개정된 KS 또는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조치 사항의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서를 미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사유서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치기한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인증서 재발급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KS의 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로 시험대상, 항목 등 따로 정한 세부사항)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이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서류 검토결과가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한 경우
3.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지위승계 신고)** ① 인증받은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흥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소재지 이전 신고)** 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는 제조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등록증 사본
4. 변동내역서(제조 · 검사설비 보유현황)

**제42조(생산중단 · 재개 신고)** ① 인증받은자가 3개월 이상 인증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KS인증제품 제조중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제품 생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을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제품의 주문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생산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중단 통보를 한 인증받은자는 중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KS인증제품 제조재개 신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산중단기간 동안 정기심사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산중단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주요 자재 변경 신고)** ①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원자재 등)을 심사 전 진흥원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진흥원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판매실적 조사 등)** 진흥원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인증 제품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자는 진흥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인증의 만료 등)** ① 사후관리 등에 따라 인증요구사항과의 부적합이 입증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된 경우에는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취소한 날로부터 1년간 공표하도록 조치한다.

1. 진흥원이 정한 조건하에 인증 계속
2. 인증받은자에 의한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인증 정지
3. 인증 취소

② 인증의 만료,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장 수수료

**제46조(수수료 산출)** 인증심사,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7조(수수료 수납 등)** ① 인증담당자는 공장심사 실시일 3일전까지 기본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공장심사비를 인증신청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증신청자가 최초 인증 및 정기심사 신청 시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진흥원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되, 인증신청자가 공장심사 개시 이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수수료 수납 및 반환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진흥원 회계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부 칙 (2016. 1. 14)

**제1조**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 KS인증대상 품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부 칙 (2017. 3. 16)**

**제1조**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9)**

**제1조**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1]의 KS인증대상 품목 및 KS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별표 1](개정2019.8.19)

## KS인증대상 품목 및 KS표준

| 번 호 | KS인증대상 품목 | KS표준 | |
|---|---|---|---|
| | | 표준번호 | 표준명 |
| 1 | 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 KS B 7303 | 건식 가정용 청소로봇 |
| 2 | 교구용 로봇 | KS B 7302 | 교구용 로봇 |
| 3 | 교육 보조 로봇 | KS B 7304 | 교육 보조 로봇 |

[별표 2](개정2017.3.16)

## KS인증 수수료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가.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 인증서 발급비<br>ㅇ 최초 발급시 : 10,000원<br>ㅇ 재발급시 : 30,000원 |
|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 진흥원"여비지급규칙"에 따름 |
| 다. 공장심사비 | 인증심사에 투입하는 인증심사원 2인의 노임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 |
| 라. 제품시험 수수료 | 진흥원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
| 마. 시료 운반·조작비 |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

비고 1. 국내 및 해외 인증심사 출장비는 실비 기준으로 적용(진흥원 소재지 중심으로 차량 이동거리 160 Km이상은 1박 2일 적용)

2. 공장심사비는 국내의 경우 현장 인증심사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의 경우 현장 인증심사 일수에 1일을 추가한다.

3. 부적합 개선조치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심사 수수료는 1인 기준의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다. 공장심사비"만 적용

4. 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 제품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
|---|---|---|

| | | | | |
|---|---|---|---|---|
| 회사 현황 | 회사명 |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본사 |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전자우편 |
| | | 공장 |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 | | | 전자우편 |
| | 설립 연월일 | | 공장 규모<br>대지: ㎡ / 건물: ㎡ | |
| | 인·허가 상황 | 형식승인 취득일 | | |
| | | ISO/KSA 9001 인증일 | | |
| | | 외국인증 취득일 | | |
| | | 기타 | | |

| | | | | |
|---|---|---|---|---|
| 자 본 금 |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 매 출 액(A) |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 경 상 이 익(B) | | 백만원 |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 원 |
| 종업원 수 (C) | 경영 간부 | |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 |
| | 기 술 직 | |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 | 사 무 직 | | | |
| | 기 타 | |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
| | 계 | |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 |

| | | |
|---|---|---|
| 품목 | 표준명 | 표준번호 |
| |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 호 칭 |

| | | | | | |
|---|---|---|---|---|---|
| 이미 인증 받은 품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표준명 | 표준번호 |
| | |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 담당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자격 구분 | 자격증번호 |
| | 전자우편 | |
| 설비 | 제조·가공 설비 | |
| | 시험·검사 설비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 수 수 료<br>진흥원 KS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 |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지 제2호서식]

#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인증번호:
계약 대상 인증 구분:

○○○○(인증받은자 이름)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진흥원이 ○○○○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진흥원이 ○○○○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진흥원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가 제조한 제품
5. 공장 또는 사업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6. 공장심사
   인증 신청된 ○○○○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진흥원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의 제품품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진흥원이 행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진흥원이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흥원의 조치
9.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10.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1)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2) KS인증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KS
    3) 품목별(분야별) KS
11. 진흥원이 정하는 인증기준
    진흥원이 정한 KS별 인증심사기준 및 KS인증업무규정

**제2조(권리 및 의무)**

1. 진흥원은 ○○○○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이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 사용을 동의한다.
2. ○○○○는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는 제품심사 시 진흥원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 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는 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또는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는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진흥원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진흥원의 비용은 ○○○○가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KS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진흥원이 심사의 일부를 진흥원과 계약에 의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KS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는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등급·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 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를 표시하는 도표
8. KS에서 제품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진흥원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진흥원은 ○○○○에 대해서 ○○○○가 제1조 10항의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11항의 진흥원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3항, 4항, 5항, 6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는 인증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는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에 한해서 KS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3. ○○○○의 KS마크의 표시는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의 체결일부터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진흥원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의 제품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는 진흥원이 제품 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진흥원은 ○○○○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진흥원은 ○○○○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인증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품목은 1년마다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3년 정기심사와 1년 정기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1년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정기심사는 최초 인증 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은 ○○○○가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진흥원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 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의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9)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5. ○○○○은 진흥원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 등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진흥원은 정기심사 시 ○○○○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진흥원은 ○○○○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는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에 관하여 인증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과 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게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진흥원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관리, 자재 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에게 통지한다. 진흥원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진흥원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진흥원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표준화법령 규정,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 등 정부 및 진흥원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10항 또는 11항이 변경된 경우 ○○○○와 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는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

○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진흥원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진흥원은 신속하게 ○○○○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의 제품이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1. 진흥원은 ○○○○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이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2. 진흥원은 ○○○○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진흥원은 심사 시에 ○○○○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진흥원은 ○○○○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가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는 진흥원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와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는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진흥원이 제3자에게 손해 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는 진흥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진흥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진흥원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진흥원은 ○○○○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진흥원의 인증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진흥원은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는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1. 진흥원은 ○○○○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진흥원의 요청에 대하여 ○○○○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진흥원은 ○○○○의 인증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는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

서는 안 된다. 아울러 ○○○○는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3. 진흥원은 ○○○○가 인증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가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흥원은 ○○○○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1. 진흥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진흥원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진흥원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가 진흥원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5) ○○○○가 진흥원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진흥원은 ○○○○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진흥원은 ○○○○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진흥원에 대한 ○○○○의 기타 통보 의무)**

○○○○는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KS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3조(○○○○에 대한 진흥원의 기타 통지 의무)**

진흥원은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진흥원이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 진흥원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가 진흥원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가 공장심사 개시 이후와 공장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진흥원은 ○○○○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 진흥원에게 문서로 이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진흥원에게 도착했을 때
2. 이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진흥원이 ○○○○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와 진흥원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진흥원의 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이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와 진흥원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와 진흥원이 각각 날인 후 그 1통을 보유한다.

인증 계약 체결 일: ○○년 ○월 ○일

○○○○ 주소
회사명(공장 또는 사업장) ○○○○
대표자명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

[별지 제3호서식]

# 정기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40일 |
|---|---|---|

| | | | |
|---|---|---|---|
| 신청인 | ① 업체명 | | ② 전화번호 |
| | ③ 소재지 | | |
| | ④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전자우편 | |
| 인증현황 | ⑤ 인증번호 | | ⑥ 인증일자<br>년 월 일 |
| | ⑦ 인증 품목(분야) | | |
| | ⑧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
| 정기심사 현황 | ⑨ 직전 정기심사일<br>년 월 일 | | |
| | ⑩ 정기심사대상 | 공장심사( )<br>사업장 심사 및 서비스심사( ), 서비스심사( ) |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br>진흥원 KS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 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에 ○ 표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에 ○ 표시

## 처 리 절 차

| 신청서 | → | 접 수 | → | 검 토 | → | 심 사 |
|---|---|---|---|---|---|---|

처리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지 제4호서식]

#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 신고자 | 기관(업체)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
| 인증품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 인증번호 | 인증일 |
| | 표준명 | 표준번호 |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 승계사항 | 승계전 | 승계후 | 승계 연월일 |
|---|---|---|---|
| 기관(업체) 명 | | | |
| 대표자 | | | |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구 분 | 첨부서류 | 국가기술표준원장 (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 수수료 |
|---|---|---|---|
|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br>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없 음 | 없 음 |
|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 1. 인증서 1부<br>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br>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
|---|---|---|---|

| | | | |
|---|---|---|---|
| 신청인 | 업 체 명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 전자우편 | |
| 인증품목<br>(인증서비스) | 인증번호 | | 인증일자(년월일) |
| | 표준명 | | 표준번호 |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사 유 | |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재발급 신청의 경우<br>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br>2. 변경 신청의 경우<br>가. 인증서 1부<br>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br>진흥원 KS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 |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지 제6호서식]

# KS인증제품 제조중단 신고서

| | | | | |
|---|---|---|---|---|
| 신청인 | 업 체 명 | | | |
| | 소 재 지 | | |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 대 표 자 | | 팩스번호 | |
| 인증사항 | 인증번호 | | 최초인증일자 | |
| | 표준번호 | | | |
| | 표 준 명 | | | |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 |
| 중단기간 | | | | |
| 중단사유 | | | | |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KS인증제품 제조 재개 신고서

| | | | | |
|---|---|---|---|---|
| 신청인 | 업 체 명 | | | |
| | 소 재 지 | | | |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 | 대 표 자 | | 팩스번호 | |
| 인증사항 | 인증번호 | | 최초인증일자 | |
| | 표준번호 | | | |
| | 표 준 명 | | | |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 | |
| 재개일자 | | | | |
| 비 고 | | | | |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신설2019.8.19)

#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없음 |
|---|---|---|

| | | | |
|---|---|---|---|
| 신 청 인 | 회사명 |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신청 품목 | 인증기관 | | |
| | 인증일자 | | |
|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 |
| | 종류 등급 및 호칭 | | |
| 정기심사 |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
| | 최종 정기심사일 | |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으로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br>2. 인계인증기관 발급 인증서(인증서 반납 위임 시)<br>3. 위임장(인증서 반납 위임 시) |

처 리 절 차

| 신청서 | → | 접 수 | → | 정보요청 | → | 정보제공 | → | 조건 확인 | → | 변경심사 |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자 | | 처리기관: 진흥원 | | | | 처리기관: 인계인증기관 | | 처리기관: 진흥원 | | | | |